칸트의 최고선 개념에 대한 연구

강 지 영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1. 문제의 지평

칸트는 세 비판서의 후반부에서 최고선das höchste Gut의 문제를 다룬다. 세 비판서의 후반부가 도덕적 이념의 실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선은 도덕성의 실천에 대한 칸트의 관심을 반영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론이성은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 의지의 자유와 같은 사변 형이상학의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없다. 최고선을 매개로 사변이성에게는 월권적인 것으로 간주된 이념들이 실천이성에게는 도덕성의 촉진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칸트에게 이성의 실현은 사변형이상학이 아닌 윤리형이상학의 문제인 것이다.

최고선은 이성의 도덕적 사용에서 비롯된 도덕성과 이에 비례하는 행복의 결합을 뜻한다. 이는 인간의 감성적 측면과 예지적 측면을 매개하는 것이자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의 통일, 바꿔 말해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통일을 가리킨다. 또한 최고선은 순수실천이성의 궁극목적이다. 이는 칸트가 도덕성에 의해 궁극적으로 무엇이 성취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칸트는 최고선을 한 인격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및 역사의 차원까지 확장하여 다룬다. 역사의 규제적 이념으로서 최고선은 도덕적 이념의 요구를 자연 일반에 각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선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행복을 구성요소로 가지기 때문에[1],

---

1) 이 점이 칸트의 '최고선'das höchste Gut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어렵게 한다. 칸트는 선·좋음bonum을 선das Gute과 복das Wohl로 구별한다.(KpV O105=V60) 선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gut 것이고, 복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최고선은 고대의 행복주의Hedonism으로 회귀하는 것이자, 의지의 자율성 및 도덕법의 형식성과 같은 칸트 윤리학의 특징을 훼손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Beck: 1960, Murphy: 1966, Auxter: 1979, 문성학: 2006 등) 그러나 최근에는 최고선이 형식으로 규정된 도덕법에 질료적 내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Silber: 1963, Zeldin: 1971, Wike: 1992 등), 도덕적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Smith: 1984, Packer: 1983, 김봉규: 1997 등), 개인의 도덕성 추구를 넘어서서 세계를 도덕적으로 만들도록 촉구하는 정치·사회적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Yovel: 1980, Reath: 1988, Caswell: 2006 등) 최고선의 실천철학적 함의를 긍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칸트 비판기 주요 저술(『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 제시된 최고선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규정을 제시하고, 칸트의 최고선 개념을 통해 칸트 실천철학의 현대적 의의를 조망하는 것을 과제로 가진다.

2. 칸트의 비판기 저술에서 '최고선'의 개념

1) '최고선'의 개념

칸트의 비판기 저술에서 최고선은 네 가지 측면("희망의 대상", '순수실천이성의 총체적 객관', "순수실천이성의 궁극목적", "역사의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좋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할 때, 최고선 das höchste Gut은 선das Gut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최고선을 '윤리성(도덕성)'과 같은 무조건적인 선과 '행복'이라는 조건적인 선의 종합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최고선을 재래의 최고선summum bonum에 상응하는 '최고로 좋음'으로 보기도 어렵다. 칸트의 최고선은 도덕법칙을 최상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래의 최고선과 변별되기 때문이다.

규제적 이념")으로 조망할 수 있다.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서술에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차원이 있다. 형식의 차원에서 최고선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내용의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덕("행복할만한 자격있음" 혹은 윤리성)과 행복의 결합으로 제시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이성의 모든 관심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한다.(KrV A805=B833)[2]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Was kann ich wissen?"이다. 칸트는 이론적인 의도에서 세계에 대해 유의미하게 진술하려면 경험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신의 존재라든가, 자유라든가,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인식erkennen할 수 없지만 사고denken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Was soll ich tun?"이다. 이 질문은 실천이성의 관심사와 관련된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질문이다. 이성의 사변적 사용에서는 월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영혼의 불사, 자유, 신의 현존은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Was darf ich hoffen?"이다. 최고선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다.

칸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만약 내가 행복할만한 자격이 있도록 행위했다면, 행복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바꾼다. 여기에서 "내가 행복할만한 자격

---

2) 이하 칸트의 원전을 인용함에 있어,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약호: KrV)는 초판(1781)을 A로, 재판(1787)을 B로 표시하며 이어 면 수를 제시한다. 또한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약호: KpV)의 경우 초판(1788)은 O(Originalausgabe)로, 베를린 학술원판Akademie-Ausgabe은 이 책이 수록되어있는 5권을 지시하는 V로 표시하고 이어 면 수를 제시하되, 부호 "="를 사이에 두어 양자를 병기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칸트 원저와 우리말 제목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인용된 저술의 완전한 서지사항은 본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하라.)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윤리형이상학 정초』(약호 GMS)
Kritik des Urteilskraft『판단력비판』(약호 KU)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약호 Rel)
Metaphysik der Sitten『윤리형이상학』(약호 MS)

이 있도록 행위했다면"이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를 했다면", 즉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했다면'을 의미한다. 도덕적 행위만이 행복을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행복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덕법칙과 자연법칙은 예지계와 현상계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 적용되는 법칙이기에, 도덕법칙에 입각하여 행위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행복이 주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칸트는 자연 질서에도 도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 "모든 것이 윤리적 법칙들에 맞는" 세계인 "도덕 세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KrV A808=B836) 칸트는 도덕 세계를 "도덕성과 그에 부합되는 행복이 비례하게끔 결합된 체계ein solches System der mit der Moralität verbundenen proportionierten Glückseligkeit"(KrV A809=B837), "자체적으로 보답을 받는 도덕성의 체계System der sich selbst lohnenden Moralität"(KrV A809=B837)로 규정한다. "도덕세계"란 모든 사람이 도덕법에 의거하여 행위한다고 가정된 세계이며,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 가능하고, 도덕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세계이다.(KrV A808=B836) 이러한 세계는 지성적 직관의 대상일 수 없지만, 이성의 도덕적 사용을 통해 객관적 실재성을 가진다. 즉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은 실천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도덕세계는 하나의 실천적 이념이며,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도덕세계"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최고선이 단순히 개인 자신의 행복과, 그 행복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라는 도덕적 요구를 결합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덕적인 이상이며, 도덕성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능한 행복의 체계에 대한 이념이다. 이 개념은 『윤리형이상학정초』에 언급된 "목적들의 나라"(GMS B74=IV433)로 이해될 수 있다. 목적들의 나라는 "체계적으로 연결된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그리고 개개 이성적 존재자가 스스로 세울지도 모르는 고유한 목적들의) 모든 목적들의 전체"(GMS B74=IV433)로 규정된다. "목적들의 나라"와 "도덕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목적으로 대우한다. "목적들의 나라"의 정식은 도덕성의 이름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세우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목적을 체계적으로 충족하도록 한다.

이성은 감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에 대응하는 직관의 대상이 주어지지 않는 무제약자를 추구하려는 변증성을 가진다. 이성은 사변적 사용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 사용에서도 무제약자를 추구한다.『실천이성비판』(약호KpV)에서 최고선은 이성의 변증성에 기인한 "순수실천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die unbedingte Totalität des Gegenstandes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KpV O194=V109), "도덕적으로 규정된 의지의 필연적인 최고 목적"(KpV O207=V115)으로 제시된다. "순수실천이성의 대상"은 "자유를 통해 가능한 결과로서의 객관이라는 표상"을 뜻한다.(KpV O100=V57) 칸트는 "의지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객관적 근거로 쓰이는 것"(GMS B63=IV427) 즉 "어떤 개념이 대상의 원인(그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상"(KU B33)을 일러 "목적"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순수실천이성 즉 순수 의지의 대상은 목적이며, "무제약적 총체"는 이 목적들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순수실천이성의 전 객관"이라는 표현은, 자유의 결과로 나온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총체적 목적, 선한 목적들의 체계적 총체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가 도덕과 관련하여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의아함을 느끼게 된다.『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개진된 윤리적 형식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즉 도덕법이 다른 목적과 관련되지 않고서(GMS B39=IV414)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칸트의 지적은 도덕적 결단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3] 왜 '결과'에 대한 질문을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

3) Allen W. Wood, *Kant's Moral Religion*,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London), 1970, pp.38-49.

칸트는 의지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본다.(GMS B63=IV427) 목적은 이성에 의해 결정되면 객관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이다. 형식적인 원리는 모든 주관적인 목적을 도외시하는 것이지, 목적들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성에 의해 목적이 선택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은 본성상 "목적을 추구하고"(KrV A797=B825)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세우는"(GMS B82=IV437) 이른바 자기 목적성을 가진다.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로 인해 이성은 도덕적 의지의 절대적 원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의지의 총체적 대상" 즉 최고선을 규정하게 된다. 정언명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정언명령은 부가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최종 산물로 무엇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최고선에 대한 참조가 아니라 도덕법에 대한 존경만으로 도덕법을 따를 수 있지만, 최고선은 순수실천이성의 "총체적"인 객관으로서 도덕적 결단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칸트가 최고선을 순수실천이성의 全 객관, 무제약적 총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정언명령은 도덕적 행위의 최종 산물로 무엇이 실현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최고선은 특정한 시점에서 나의 도덕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가져올 결과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도덕적 행위가 그것으로부터 촉발되어야 하는 총체적인 대상이다. 즉 최고선은 생애 나아가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지탱하는 것이다.

한편 『판단력비판』(약호KU)에서 최고선은 "순수실천이성의 궁극목적"(KU B412)으로 규정되며, 이는 세계를 목적론적으로 통일하여 이해하려는 이성의 요구를 반영한다. 우리의 행위는 도덕법칙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이것은 자연이 이 목적에 부합할 때 가능하다. 만약 자연이 도덕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바꿔 말해 도덕법의 명령을 자연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도덕법은 공허한 망상leere

Hirngespinste(KrV A811=B839)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기획에 관여하고 있는 한에서, 판단력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련된다. 합목적성 일반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에서, 반성적 판단은 자연을 도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질서의 근원에 대한 사고를 포함한다. 자유는 자연의 세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인과성이라면, 궁극목적인 최고선은 촉진될 수 없다. 최고선은 자연세계가 윤리적-목적론적 합목적성을 따라 짜여 있다고 희망하도록 해준다.

궁극목적이 자연질서의 근저에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이는 실천이성의 원리와 반성적-목적론적 판단력의 원리가 일치함을 표상함으로써 파악가능하다. 자연에서 궁극목적일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지는 유일한 것, 즉 인간의 자유 및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객체인 최고선이다.[4] 만약 자연체계의 최종 목적이 인간의 자유를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능한 최고선을 인간의 궁극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고선은 감성계와 예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감성계가 도덕적 의지를 실현하는 장소라는 것을 가리킨다.

도덕법은 최고선의 추구를 명령한다. 우리는 덕과 행복의 합치를 자신 안에서 가져야 하는 "한 인격에서 최고선"(KpV O199=V110이하)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서 덕과 행복의 합치를 실현하는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KpV O199=V110이하)을 의무로 가진다. 어떤 것이 의무라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선이 의무가 될 때, 최고선의 요소인 행복의 의미 또한 보편화되고, 단순한 개인적 만족으로 환원할 수 없게 된다. 도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의 특수한 목적들이 우리에게도 필연적인[필수적인]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최고선은 이기적이지 않

---

4) Paul Guyer, *Kant(Routledge Philosophers)*, Routledge, 2006, p.352.

은 행복을 도덕성에 통합시킨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덕을 얻고 덕에 비례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특수한 목적들과 양립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 즉 도덕적 세계의 형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판단력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최고선의 사회적 측면('가능한 세계에서 최고선')에 대한 더 많은 서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이후의 저작에서 최고선 개념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5] 우선 최고선은 초재적 세계가 아닌 '이' 세계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선은 "이 세계에 있어서 궁극목적"(KU B423), 즉 '이' 세계의 완성된 상태이자, 지상 위에서 목적들의 나라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최고선과 '이' 세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이상Ideal이라는 한 세계에 대한 두 개의 상태를 뜻하게 된다. 둘째로 이처럼 최고선이 '이' 세계에서 실현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사의 진보는 실천이성에 따르는 의식적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고선을 촉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도덕적 행위 주체는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교회 또는 지상 위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설정된다. 또한『판단력 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최고선은 더 이상 덕과 행복의 '비례적인' 결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덕과 행복은 단순히 결합된 것으로 나타나며[6] 이는 최고선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자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 자유의 종합을 의미함을 가리킨다. 이는 도덕적 이념의 요구가 우리의 경험적 환경 전반에 각인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목적인 최고선은 단지 한 개인 안에서가 아니라 세계 안에

---

5) Yirmayahu Yovel,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30-31.

6) 『판단력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는 proportionierten 대신 einstimmen(einstimmig), zusammentreffen, zusammenstimmen 등의 동사가 사용되며, 최고선은 덕과 행복의 '총체'Totalität, '조화Harmonie', '종합Synthesis'으로 제시된다.(KU B424, B425, B429, B423 등; Rel BA IV, VII, VIII, Anm. XIII 등을 참고하라.)

서, 즉 사회적인 윤리적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최고선으로 제시된 "윤리적 공동체"(Rel B130=A122)는 특정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 조직된 인류 공동체를 뜻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르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장할 때 도덕의 원리에 따르는 세계가 가능하다. 칸트는 순수한 도덕 법칙 아래에서 세워진 인간들의 결합을 "윤리적 공동체"(ein ethisches gemeines Wesen)라고 부른다. "윤리적 공동체"를 촉진하라는 의무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는, "인류의 인류에 대한 의무"로 규정된다.(Rel A128=B136)

『판단력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최고선은 사회적 제도 및 인간 행위에 의해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회적 목표를 의미한다. 최고선은 단순히 행복과 도덕성의 결합을 뜻하지 않으며 물리적 의미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문화)을 포함하는 자연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장된다. 또한 도덕성의 보답이 도덕법칙에 따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고선은 "도덕적 자연"에 대한 일반 관념을 가리키게 된다. 세계의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위주체는 도덕적 '인류'로 상정되며, 전체 인류가 도덕의식을 세계 속에 구현하는 것을 통해 도덕적 세계가 가능해진다. 주체는 자신의 인격성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 진보를 떠맡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정립해야 한다. 도덕적 세계의 창조는 하나의 개별적 행위라는 제약을 벗어나 전 인류의 집합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요약하면 최고선은 이성의 관심Interesse에서 도출된 "희망의 대상"이며, 무제약자를 추구하는 이성의 변증성에 기인한 순수의지의 총체적 객관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목적들을 통일하는 최상의 목적이자 순수실천이성의 궁극목적이다. 목적의 체계인 최고선은 의지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상도 가진다. 최고선은 "윤리적 공동체"(Rel A128=B136), "보편적 교회"(Rel A174=B184)와 같은 사회적 목적을 도덕법의 형식에 부여한다.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설명에서는 최고선이 감성적 세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세 혹은 예지적 세계에 있는 것인지 모호하게

남겨져 있다.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서 최고선은 '도덕세계', 즉 덕에 비례하는 행복이 존재하는 세계로 규정된다. 이러한 사태는 감각 세계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판단력 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최고선은 시간상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무로 제시된다. 칸트는 도덕적 인격들이 상호 협력하는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표상[재현]Vorstellung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의무를 짊어진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동사회인 '윤리적 공동체'의 개념은 도덕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총체이며, (인간의 제도로서는) 교회의 형식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2) '최고선'의 실현가능성

어떤 부분에서 최고선은 단순히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으로 규정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덕과 행복의 '비례적인' 결합으로, 또는 "조화" 혹은 "종합"으로 규정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최고선이 내세 혹은 예지적 세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감성적 세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칸트는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라'고 하기도 하고, '힘이 닿는 한 촉진하라'고 하기도 한다. 만약 최고선이 감성세계에서 실현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덕과 이에 상응하는 행복의 결합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최고선이 덕과 '이에 정확히 비례하는' 행복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이는 신적인 행위자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한한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행위의 동기를 모두 알 수 없으며, 오직 감성적이고 정념적으로 규정된 자아만을 관찰할 수 있다. 누구도 도덕적 동기 이면에 정념적인 경향성이나 기대가 숨겨져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즉 우리는 현상적 차원 너머에 있는 의지의 규정근거, 즉 예지적 자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덕(혹은 도덕성)을 평가할 수 없다. 설령 우리가 타인의 덕을 통찰할 수 있는 신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례하는 행복을 부여할 전능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만약 최고선이 단순히 덕과 행복의 결합을 의미한다면, 현실 사회에서 인간의 집단적 행위와 사회 제도의 배치에 의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Reath: 1988, Neiman: 1993 등)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칸트가 명시적으로 최고선을 내세 혹은 예지적 세계와 동일시했다는 점,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신의 현존 및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칸트의 최고선 규정에는 초재적인 측면과 내재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전자는 감성세계를 초월하는 무제약적 목적의 측면이며, 후자는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재적 목적의 측면이다. 초재적 의미에서 최고선은 최고선의 총체적인 실현total realization으로, "도덕세계" 및 "하느님의 나라"와 같은 예지적 세계로 제시된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자, 선의 '규범적normative'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한편 내재적 의미에서 최고선은 현실적인 도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칸트가 '힘이 닿는 한' 최고선을 '추구하라'고 언급할 때, 이것은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인간의 실제적 능력이 지닌 한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실버Silber, John R.은 의무를 규제적 의무와 구성적 의무로 구분한다.[7] 의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실제적인 도덕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standard을 제공할 때, 그 의무는 구성적이다. 한편 의무가 의지로 하여금 자유의 범위를 측정하도록 하는 표준을 제공할 때, 그 의무는 규제적이다. 규제적 의무와 구성적 의무라는 구별을 채택하는 것은 최고선의 의무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의무가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라는 명령으로 제시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명령은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의지가

---

7) Silber, John R.,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as Immanent and Transcendent", *the Philosophical Review* vol.68 no.4, 1959, pp.496-499.

의무에 '구성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고선의 총체적 실현이 구성적으로가 아니라 규제적으로 의지에 관련된다면, 초재적 측면에서 최고선은 의지의 불가능한 객관이 아니다. 최고선의 완벽한 성취라는 생각을, 자유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규제적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고선의 초재적 이념을 규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최고선과 도덕법을 실천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최고선을 완전히 실현하라는 규제적 의무를 참고함으로써 비로소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구성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최고선을 덕과 행복의 비례적인 결합이자 실천이성의 총체적 객관으로 규정한다면, 이 규정은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으로 간주될 때 모순 없이 이해될 수 있다.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에서 행복은 淨福Seligkeit으로, 덕은 신성성 혹은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의지로 대체되기 때문에, 덕과 행복 사이의 이율배반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최고선이 '완전히 실현'된다면 인간에게는 목적론적으로 제시된 목표 자체가 생각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나 목적론 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최고선의 '완전한' 성취는 곧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현상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고선은 감성세계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텔로스로 간주될 때 유의미하다.

그런데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최고선의 실천적 측면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희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감성적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은 이 세계 안에서 행위하기 위한 규제적 이념의 위상을 가진다. 이때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이 순수실천이성의 필연적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성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은 경험세계가 궁극목적을 향해 목적론적으로 질서 지어진 것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즉 우리는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통해서 최고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초재적 최고선이라는 이상Ideal은 감성 세계 안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이상을 매개로 이 세계의 진행이 단지 맹목적인 기

계적 인과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덕과 행복의 비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질서 지어져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세계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최고선의 요소인 '행복'에 대한 칸트의 규정과 잘 부합한다. 칸트는 최고선의 두 번째 요소로 행복을 제시하면서, 이 행복이 도덕성을 조건으로 하며, 도덕성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칸트는 행복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존중하고, 행복이 도덕성의 동기부여 요인motivating factor라는 것을 이해하여 최고선에 행복을 포함시킨다. 그런데 행복을 최고선의 요소로 도입함으로써, 칸트의 행복 개념은 애매해진다. 행복을 윤리학의 토대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언급하는 '행복' 개념과 최고선의 요소로 도입된 '행복'이 일관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는 감성적·감각적 쾌에 가깝고, 후자는 도덕성을 조건으로 하며 도덕성에 의해 제약된 것이다.[8]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칸트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물리적(자연적) 행복der physischen Glückseligkeit"과 "도덕적 행복der moralischen Glückseligkeit"을 구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Rel A80=B87) 물리적(자연적) 행복은 "개인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항상적 만족"(악으로부터의 자유와 끊임없이 증대하는 쾌락을 누리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행복은 "선을 향해 전진하는 (선에서 벗어남이 없는) 마음씨Gesinnung의 현실성과 일관성"을 가리킨다. 즉 도덕적 행복은 의무를 따를 때, 선을 향해 전진할 때 수반되는 만족감을 가리킨다.[9] 이것은 감성이나 쾌락 및 경향성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며, 도덕법칙에 대한 복종에서 직접적으로 따라 나온 도덕적 쾌감Lust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복은 순수의지의 자율성을 훼손

---

8) Thomas Marshall, "The Ambiguity of Kant's Concept of Happiness", *Reason Papers vol. 26*, 2000, pp.24-25.

9) 칸트는 쾌감이 감각뿐만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KU B154) 감각에서 비롯된 감성적 쾌감은 도덕법칙에 앞서는 것이고, 도덕성에서 비롯된 도덕적 쾌감은 도덕법칙에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칸트가 행복을 도덕의 원리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그러한 의미의 '행복'은 "물리적(자연적) 행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고선을 이루는 행복은 "도덕적 행복"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및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도덕성에 부합하는 쾌Lust를 일러 "도덕적 행복"이라는 표현 대신, "자기만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자기만족"이 최고선을 구성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최고선의 행복이 신의 현존과 영혼의 불멸성을 가능성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반면에, "자기만족"은 이러한 요청명제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만족"을 최고선을 이루는 행복으로 간주한다면, 행복이 덕에 대한 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스토아학파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최고선을 구성하는 행복은 도덕적 행복을 뜻하지 않는다. 최고선을 구성하는 행복이 신의 현존과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한다는 점, 도덕성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 의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행복은 내세에서 가능한 행복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이고 예지적인 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감성적 영역의 우연적인 원인들에 대한 독립 및 영혼의 무한한 지속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의 행복 개념이 과연 도덕적 행위의 동기부여 요소로 충분한 것일까? 이러한 의미의 행복은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데 유인동기incentive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칸트가 행복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존중하여 최고선에 행복을 도입한 것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선이 내세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최고선을 구성하는 행복 또한 내세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행복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 "희망의 대상"(KrV O232=V129)의 위상을 가진다. 이렇게 파악할 때 최고선은 내세에서 가능하지만 감성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된다. 최고선은 자연과 이성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동시에 메우는 개념이다. 행복에 대한 희망은 이 간극을 의식하면서, 그러나 이 세계가 이성의 요구에 부합하기를 희망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허용한다. 규제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계가 도덕적 이

성이 제시하는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도덕적 노력들이 보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희망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감성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자인 우리가 이성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성의 요구에 맞도록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희망은 충분히 허용된다.dürfen

3. 최고선을 통해 조망한 칸트 실천철학의 의의

1) 최고선에 대한 현대적 논의들[10]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최고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최고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최고선이 칸트의 도덕철학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고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들[11]에 따르면 최고선은 도덕적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10) 국내 연구 중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박필배의「칸트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칸트연구』 제10권, 2004)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박필배는 "칸트의 최고선 이론을 윤리학의 내적인 맥락에서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예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성 체계의 완성이라는 칸트의 절대적 과제 속에서 최고선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칸트연구』 제10권, 2004, p.104) 것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최고선의 역할을 칸트 윤리학의 내재적 맥락에서"(같은 곳, p.131)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박필배가 논의의 필요에 맞춰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60년대에서 2007년까지의 칸트의 최고선 연구 동향을 네 개의 흐름으로 포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각 흐름들은 칸트 윤리학의 어떤 지점들을 겨냥하고 있는가에 따라 변별되는데, 우리는 이 흐름들이 칸트 윤리학의 어떤 지점과 대결하고 있는지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칸트 윤리학의 현대적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11) Lewis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Reprint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Jeffrie G. Murphy, "The Highest Good as Content for Kant's Ethical Formalism: Beck versus Silber", *Kant-Studien 56*, 1966. ; Thomas Auxter, "the Importance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History of Philosophy 17*, 1979.; Thomas Marshall,

자율적인 의지는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것이므로, 특정한 대상을 향한 욕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그런데 최고선이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이자 질료가 된다면, 이는 의지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칸트가 순수의지의 필연적[필수적] 대상과 의지의 규정근거를 구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반박은 논박될 수 있다. 최고선이 순수의지의 규정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최고선의 개념 속에 최상조건으로서 도덕법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덕법은 최고선의 첫 번째 '조건'이며, 행복은 두 번째 '요소'이다.(KpV O198이하 =V110) 따라서 최고선은 도덕법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도덕법은 실천적 규정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가져야 한다. 만약 도덕법이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을 함축하지 못한다거나 의지의 대상인 최고선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도덕법은 구속력을 상실하고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덕법은 순수의지의 규정근거이며, 최고선을 순수의지의 객관으로 간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최고선은 도덕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 의지의 대상인 동시에 그 의지의 규정근거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도덕법의 형식과 분리된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최고선은 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없다. 그러나 최고선이 도덕법의 형식을 조건으로 하여 현실화되는 대상임을 고려한다면, 최고선은 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있다. 최고선은 의지의 형식, 즉 도덕법에 의해 명령된 의지의 내용이다. 도덕적 목적은 순수이성에 의해 명령되고 의지를 규정하는 도덕법칙의 형식과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목적 자체는 의지의 규정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도덕법의 형식으로 연접 conjunction된다면, 객관적 목적들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일 수 있다. 만약 칸트의 추론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고선을 '순수실천이성'의 필수적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만약 '실천이성'의 필수

"The Ambiguity of Kant's Concept of Happiness", *Reason Papers vol. 26*, 2000.;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John Rawls,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등

적 대상으로 간주했다면, 이 개념은 논란 없이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칸트는 "법칙에 따라서 채택되는 준칙의 근거" 혹은 "의지 규정에 앞서는 표상"으로서 목적과 "결과로서 목적"을 구별함으로써 (Rel BA VI), 최고선이 타율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의지를 규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도덕법칙은 준칙의 보편적 합법칙성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의지를 위한 질료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목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의지규정과 관련하여 '준칙의 근거로서 목적'은 부정하지만, 결과로서 일어나는 목적은 긍정하고 있다. 만약 결과로 일어나는 목적finis in consequentiam veniens(Rel BA VII)이 없다면, 의지가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만 하는 규정된 대상을 생각할 수 없다. 최고선은 준칙의 근거로서 의지 규정에 앞서는 표상이 아니라, 결과로 일어나는 목적을 뜻한다.

최고선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가를 수 있다. 각각은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 세속적secular 의미의 최고선, 초재적·신학적 의미의 최고선을 긍정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첫 번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12], 최고선이 도덕법칙의 형식적 명령에 '덕에 비례하는 행복', '도덕세계'와 같은 질료적 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고선을 긍정한다. 이들은 최고선이 형식적 의무에 질료적인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의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도덕법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들은 칸트의 도덕법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도덕법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범들을 도덕법칙에서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최고선이 없다면 칸트의 윤리학은 공허한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거나, 윤리적 행위를 촉진하지 못할 것이다.

---

12) John R. Silber, "The Importance of Highest Good in Kant's Ethics", *Ethics 73*, 1963 April; Mark Packer, "the Highest good in Kant's Psychology of Motivation", *Idealistic Studies 63*, 1983.; Steven Smith, "Worthiness to be Happy and Kant's Concept of the Highest Good", *Kant-Studien 75*, 1984.

이는 칸트의 윤리적 형식주의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맥락을 함께 한다. 헤겔은 정언명령을 통해서는 의무에 대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정 이상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무라는 추상적 개념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한다. 바꿔 말해 칸트의 윤리학은 '선'의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즉 역사적으로 특수한 윤리적 삶이라는 실체를 배제하고 있다. 이들은 칸트의 도덕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도덕법칙이 순전히 형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무의 원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언명령의 형식적 측면을 나타내는 보편화의 정식[13]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의 보편적 원리를 정식화해야 한다는 정도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위자의 준칙이 "보편적으로 의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행위자가 채택하는 원리의 일반적인 기준, 예측 가능한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준칙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보편화 가능한 것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거부되어야 하는지 가려내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칸트가 제시한 원리들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단 칸트는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때 판단과 심사숙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원리들은 (계산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강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우리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14]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칸트 윤리학의 힘을 이러한 형식적 무

---

13) "준칙들은 마치 그것들이 보편적 자연법칙들같이 타당해야 하는 것처럼 선택되어야 한다."(GMS B80=IV436)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GMS B52=IV421)
"마치 너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GMS B52=IV421)

14) O'neil, Onora, "Kant on Reason and Religi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editied by G.B.Peterson)*, Salt Lake City: University Utah Press, 1997, pp.272-274.

규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주체는 도덕법칙 자체로부터 특수한 상황에서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이것은 주체 자신이 도덕법의 추상적 명령을 일련의 구체적 의무로 변환해야 할 책임을 가짐을 의미한다. 윤리적 주체는 자신이 따를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에 책임을 진다. 바꿔 말하면, 도덕규범의 보편성은 이 규범을 떠맡는 주체 자신의 행위를 통해 보증된다. 따라서 칸트에게 윤리적 판단은 (단순히 보편 법칙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대신 각각의 고유한 상황에서 보편법칙을 재창안해야 하는) 미적 판단의 구조를 드러낸다.

우리는 인간의 인격이 지닌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의 실천적 함의를 발견한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개별 인격들은 스스로 행복을 창출하고, 도덕법칙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존재자이다. 이것이 오늘날 만연해있는 공리주의적 윤리관과 칸트 윤리학을 변별하는 지점이다.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행위가 양화가능하고 계산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공리주의 또한 확산되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격은 '수동적'인 존재로, 즉 도덕성의 객체가 아니라 단순히 쾌락을 지닌 자로 파악된다. 반면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성의 객체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형성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지는 행위자이다.[15] 공리주의의 윤리적 요구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칸트 윤리학의 요구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책임 있게 만들라는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입장은 최고선이 도덕적 의무를 정치·사회·역사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최고선을 긍정한다. 이들은 '신의 현존' 및 '영혼의 불멸성' 요청과 같은 최고선의 신학적 특성들을 제거하고, 제도적이고 공동체적 차원을 부각시켜 최고선을 '세속화'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연구자는 요벨Yovel, Yirmayahu과 리스Reath, Andrew이다.[16] 요벨과 리스는 초재적 혹은 신학적 의미의 최

15) 프리도 릭켄, 김용해 역, 『일반 윤리학』,서광사, 2006, pp.388-399.

16) Yirmayahu Yovel,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36~42. Andew Reath, "Two Conceptions of the

고선이 신의 행위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무일 수 없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최고선을 실천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혹은 영혼불멸) 및 신의 현존과 같은 요청명제들을 포기하고, 최고선을 이 세계 안에서 행위하기 위한 규제적인 이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판단력 비판』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등에서 최고선이 예지적 세계 혹은 내세가 아닌 '이' 세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윤리적 공동체"(Rel A128=B136), "보편적 교회"(Rel A174=B184), "덕의 법칙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Rel A128=B136) 등과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최고선은 인간 행위자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집합적이고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목적으로 제시된다.

세속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하는 이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형식뿐만 아니라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질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흔히 칸트의 윤리학은 목적이나 욕구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를 위한 의무'만을 도덕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도덕법칙이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의 객관 혹은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의지만이 유일한 도덕적 선이라고 해서 칸트의 윤리학이 행위의 객관이나 목적을 도외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칸트가 제시한 덕 의무의 중요성, 특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덕 의무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법에 부합하여 행해진 행위가 선 자체이고, 도덕법에 따르는 준칙을 가진 의지만이 '단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선하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어떤 행위가 정언명령에 따라 행해질 때, 행위의 목적 또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객관 혹은 목적의 선함이 그것을 산출하는 준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의 객관 혹은 목적의 선함 자체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다.

Highest Good in Kan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 1988, pp.600-613.

한편 요벨Yovel, Yirmayahu은 칸트의 실천철학을 두 단계로 구분한다.[17] 첫 번째 단계는 실천의 형식적 차원에, 두 번째 단계는 실천의 질료적 차원에 해당한다. 첫 번째 단계는 『윤리형이상학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의 분석론이 속하며, 두 번째 단계에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와 『윤리형이상학』이 속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칸트는 윤리의 절대적인 원리를 선의지의 '형식' 및 '자기-입법성'에서 찾으며, 도덕적 행위는 보편화될 수 있는 준칙에 의해 규정된다. 나아가 두 번째 단계에서 선의지의 총체적인 대상이 규정된다. 이는 "지상에서 최고선을 실현하라"는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데, 이 의무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도덕적 행위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총체적인' 대상과 관련된 것이다. 그 결과 두 번째 단계에서 도덕법은 질료적 차원을 가지게 되나, 이 질료는 도덕법에 의해 제한된 것이자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도덕법의 형식적 우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요벨은 이와 같이 칸트의 실천 철학을 두 부분으로 가른 뒤 칸트의 실천철학 내에서 도덕의 질료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도덕적 의지 또한 두 가지로 분리된다. 하나는 형식적 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선과 관련된 것이다. 형식적 법과 관련해서 도덕적 의지는 순수하고 질료를 가지지 않은 비어있는 의지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 및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한다. 그러나 최고선과 관련된 도덕적 의지는 객체로 최고선을 가지며, 외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요벨은 각 경우에 행위자의 태도 또한 구별된다고 본다. 오직 형식적 법에 따르는 경우에서, 행위자는 순전히 형식적인 의무에 따름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의지의 순수성을 보존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어진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는Reactive 것일 뿐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서, 행위자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킨다. 즉 상황을 주도하게Initiative 된다.

---

17) Yirmayahu Yovel,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32-36.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은 초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의 최고선이 칸트 윤리학의 전체 맥락에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18] 이들은 칸트 철학의 '비판적' 성격을 강조하고, 세속적 의미의 최고선을 거부하거나 평가절하 한다.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는 초재적 측면과 내재적(세속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가능하게 하거나 근거 짓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최고선의 신학적 특징을 거부한다면, 이는 칸트가 최고선을 도덕에서 이성종교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증하는 개념으로 제시한 것을 간과하게 된다. 최고선의 초재적 측면을 평가절하했던 연구자들(Reath: 1988, Yovel: 1980 등)은 현상계의 요소를 예지계에 직접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경험적 요소가 오직 감성세계에만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선의 경험적 요소를 단순히 초재적·내세적인 차원으로 이동시켜 최고선 개념을 해석했다.

마리냐Mariña, Jaqueline 와 우드Wood, Allen W.는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과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 개념을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드에 따르면 칸트의 최고선 규정에는 개인의 현존과 관련된 내세에서의 淨福Seligkeit뿐만 아니라 "도덕세계"를 실현하라는 사회적 이상도 담겨 있다. 내재적·세속적 측면에서만 최고선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분명하지 않음'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신'을 통해서 최고선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선을 내재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왜 이성의 관심에서 최고선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마리냐 또한 내재적·세속적 의미의 최고선을 옹호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최고선의 '원리적 의미'로서 옹호한다. 경험 세계를 논할 때 예지 세

---

18) Wood, Allen W., *Kant's Moral Religion*, Cornell University Press(Ithaca/London), 1970.; Mariña, Jacqueline, "Making Sense of Kant's Highest Good", *Kant-Studien 91*, 2000.; Caswell, Matthew,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the Gesinnung, and the Theory of Radical Evil", *Kant-Studien 97*, 2006.; Friedmann, R. Z., "The Importance and Function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Zeldin, Mary-Barbara, "The Summum Bonum, the Moral Law, and the Existence of God". *Kant-Studien 62*, 1971.

계를 참조해야 하는 것처럼, 초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내재적 의미의 최고선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도덕적 행위의 동기 부여

칸트는 실천적 이념에서 윤리성과 행복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행복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망이 도덕적으로 행위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KrV A813=B844) 도덕성과 행복의 연결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본성적 필요natürliche Bedürfnis'이다. 무고한 사람이 해를 입거나 악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러한 '본성적 필요'를 드러낸다. 물론 덕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이라면 덕이 없을 때 자신을 행복할만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덕, 즉 행복할만한 자격있음에 비례하여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성의 요구이다. 도덕성에 대한 보답이 이성에 의해 요구된다는 점을, 칸트는 세 비판서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다.(KrV A813=B841; KpV O199=V110; KU B438)

만약 최고선이 없다면, 즉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실존 상태와 그렇지 않은 실존상태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덕과 행복 사이의 필연적 연결이 없다면, 우리는 도덕법을 실천해야 할 필연성을 정당화할 객관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만약 덕과 행복사이의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가치있음은 도덕법에 따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행복 혹은 운명은 도덕에 맹목적인 자연의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가치있음과 행복 간의 연결, 즉 의지의 절대적 순수성과 개인의 실존조건 사이의 연결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가치있음'이라는 관념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무에 대한 감각은 사회학, 심리학, 인간학 등에 의해 연구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으로 간주될 것이다.[19]

몇몇 주석가들[20]은 칸트가 덕과 행복 사이의 필연적 연결을 도입

---

19) Steven G. Smith, "Worthiness to be Happy and Kant's Concept of the Highest Good", *Kant-Studien 75*, 1984, pp.175-176.

한 것에 대해 선의지의 무제약적 선함과 도덕법의 절대적 구속력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칸트가 '오직 덕을 위해서 덕을 행한 사람에게만' 행복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즉 칸트의 질문은 "만약 덕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왜 덕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향해 있다. 흔히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을 중심으로 칸트의 윤리학을 파악할 때, 칸트의 윤리학은 행복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칸트는 행복 자체의 가치를 절하했다기보다는, 행복이 제약된 선이며 무조건적으로 선한 도덕적 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즉 칸트의 입장은 행복을 도덕의 '원리' 혹은 도덕적 의지의 '규정근거'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지, 행복 자체의 가치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실천적 원리의 원칙과 규정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자연적 변증학"(GMS B23=IV405)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경향성에 맞서서 이성의 명령을 느낀다. 그런데 이성은 행복이라 불리는 경향성의 요구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명령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무의 법칙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의무의 법칙을 경향성에 맞게 만들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바꿔 말해 자신이 도덕법칙을 어기기를 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의무의 법칙을 변질시키고 그 위엄을 파괴하려는 성벽" 즉 "자연적 변증학"(GMS B23=IV405)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칸트는 이성의 지시명령이 가능한 권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이성의 무시와 경멸을 '제한'한 것이다.

---

20) 이러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Lewis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Reprint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Jeffrie G. Murphy, "The Highest Good as Content for Kant's Ethical Formalism: Beck versus Silber", *Kant-Studien 56*, 1966.; Thomas Auxter, "the Importance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History of Philosophy 17*, 1979.

3) 최고선과 정의

최고선은 칸트 윤리학에서 정의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의 원리가 칸트의 형식주의적 윤리체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왜 최고선이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공정성fairness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분배를 가리키며, 정의로운 대우는 공정한 대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당신이 누려야 할 응분의 몫을 받는 것getting what you deserve"를 의미한다.[21] 즉 정의는 분배적인 개념이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물들을 사람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다. 반면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유용성은 총체적인 개념이다. 공리주의의 목표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서 '공리의 총량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리주의는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만 고려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만족의 총량이 최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만족의 원천이나 성질을 도외시할 수 있다.[22] 그 결과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용성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은, 최대의 유용성을 생산하기 위해서 분배의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정의와 유용성의 관계는 우연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에서 정의로운 분배의 결과로 생산되는 가치의 총량은 부정의한 방식의 분배로 생겨나는 가치의 총량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23]

---

21) 존 호스퍼스, 최용철 역, 『도덕행위론』,지성의 샘, 1994, p.449.

22) 존 롤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pp.27-30.

23) 밀은 이처럼 정의의 관점에서 제기된 공리주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리주의를 옹호한다. 밀에 따르면 정의라는 덕목 자체가 공리에 근거하며, 정의는 공리주의에서도 유의미하고 중요한 개념이다.
"나는 공리에 근거한 정의가 모든 도덕성의 주요 부분이 되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ohn S. Mill,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10(Utilitarianism)*,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9, p.255),
"사회적 연대가 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각 개인은 누구나 타

반면 칸트의 윤리적 형식주의에서 정의는 도덕 공동체의 관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가치로 고려된다. 도덕공동체의 모든 규칙들은 자율적 존재인 모든 도덕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존재 각자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간주한다면, 오직 그 방식만이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를 일반화하자면, 어떤 규칙도 그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규칙을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오직 그 때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최고선은 덕과 행복의 '비례적인' 결합이라는 점에서, '목적들의 나라'(GMS B74=IV433)로 표현되는 "도덕세계"(KrV A808=B836)라는 점에서 정의의 구체적인 현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최고선은 덕에 비례하여 배분된 개인적인 행복을 가리킨다. 칸트가 덕을 "행복할만한 자격있음"으로 파악한 것은 '좋음' 일반을 고려할 때 '도덕적 선' 즉 '옳음'을 전제해야만 함을 강조한 것이다.[24] 사회적 차원에서 최

인의 복지를 실천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점점 더 강렬한 개인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선[이익]과 동일시하게 되거나 또는 최고한 그것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고려하게 된다."(*Utilitarianism*, ch.3)
즉 밀은 정의가 큰 공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에 대해 도덕적 힘을 부여하는 것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것을 싫어하고 정의의 실현에서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 있다. 바꿔 말해 정의의 원리가 공리의 원리에서 도출 가능하며, 정의가 인간의 행복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학적 가정은 자명하지도, 보편타당하지도 않다.

24) 이는 공리주의가 욕구의 만족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욕구의 질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롤즈Rawls, John의 비판과 맥락을 함께 한다. 만족의 원천 및 성질을 도외시하고 만족의 '총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욕구가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욕구보다 클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롤즈는 모든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할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는 '옳음'right에 부합하는 욕구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존 롤즈, 같은 책, pp.252-256) 이러한 롤즈의 정의관은 선행하는 '덕'을 조건으로 하여 덧붙여지는 '행복'으로 구성된 칸트의 '최고선' 구조와 유사하

고선은 "도덕세계" 혹은 "목적들의 나라"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구성원 각각은 보편적 법칙수립자로서 목적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1) 개인적 최고선: 정당한righteous 행복

최고선은 덕과 덕에 비례한 행복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이것이 개인적 차원의 정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칸트에서 덕이 행복할만한 자격있음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는 종종 덕을 '윤리성' 혹은 '행복할만한 자격있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왜 덕이 윤리성 혹은 행복할만한 자격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선 칸트에게 왜 덕이 '윤리성'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자.

칸트에서 덕은 기본적으로 "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려는 자연적 경향성에 맞서는 도덕적 성향disposition의 윤리적 힘[강력함]"[25]을 가리킨다. 칸트 자신의 정의를 따르면, 덕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때 인간 존재의 의지가 지닌 도덕적 힘"(MS 405),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확고하게 세워진 마음씨die fest gegründete Gesinnung, seine Pflicht genau zu erfüllen"(Rel Anm. B12), "자기가 존경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 Anwendung eigenen Kräfte der von ihm verehrten Pflicht"(Rel B313=A295)을 가리킨다. 도덕법은 개인의 준칙을 법칙에 합치시킬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편 법칙의 형식을 가진 준칙만을 채택하는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덕이라는 '도덕적 힘'은 개인의 성향으로 하여금 도덕법의 조건에 따르는 준칙만을 채택하도록 하는 의지의 힘을 가리킨다. 그 결과 덕이 발휘될 때, 우리는 보편 법칙의 형식을 지닌 준칙만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의지의 성향은 개인의 실천적 태도를 규정한다.

다.

25) it[virtue] is a strength of the moral disposition in the face of natural inclinations to act in ways contrary to duty([]은 인용자) (Steven Enstrom, "the Concept of the Highest Good in Kant's moral Theor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LII, no.4, 1992, p.762.)

> "의무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밖에는 명령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혁명이 필연적이며, 감각방식Sinnesart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서 인간에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조화시킨다는 의미인 것이다."(Rel B55=A51)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악에 대한 성향' 혹은 "근본악"(Rel A33=B36),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arrogantia" 혹은 "자기기만Eigendünkel"(KpV O129=V73이하)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근본악이란, 자기애에 따라 행동하려는 원칙을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려는 원칙 위에 두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성향을 가리킨다. 칸트에게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의 차이는 동기의 실질적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종속관계에, 즉 그 사람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과 경향성 중 어떤 것을 다른 것의 조건으로 삼는가에 있다.(Rel A31=B34) "자기기만"은 한낱 감성에 의거하는 것이자, "윤리법칙과의 합치 이전에 생긴 자존심에 대한 요구"(KpV O129=V73이하)를 뜻한다. 이러한 근본악과 자기기만은 순수실천이성과 양립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덕'을 통해 마음씨Gesinnung를 변혁함으로써, 근본악이나 자기기만과 같은 선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상계에서 자유의 현상은 덕이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한 투쟁이자, 인간성에 거스르는 경향성의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다. 인간은 점진적인 습관화를 통해 덕을 달성하며, 덕을 달성했다는 성공의 표시는 도덕적 행위의 실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도덕적 목적이 진정으로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덕은 내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과연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태도를 잘라내는 힘을 가리킨다. 덕을 통해서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된 목적에 따를 때, 우리는 실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우리에게 덕을 계발시키도록 동기화하며, 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칸트가 덕과 도덕성(윤리성)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칸트는

윤리성이 '행복할만한 자격있음'과 같은 의미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행복이 그 자체로는 선할 수 없으며, 도덕성을 전제로 할 때만 선한 것이라는 칸트의 근본적인 입장에 기인한다.

결국 덕있는 사람은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가져올 수단을 소유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도덕법에 의해 명령된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은 동시에 정당하게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킨다. 최고선의 개념에 따라 사물의 질서가 실현된다면, 오직 정의로운 의도만이 성공할 것이며, 사람들은 도덕적일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최고선: "도덕세계"와 목적 자체로서 인간

우리는 앞서 칸트의 최고선 즉 "도덕세계"(KrV A808=B836)가 "목적들의 나라"(GMS B74=IV433)와 동일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목적들의 나라는 "체계적으로 연결된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그리고 개개 이성적 존재자가 스스로 세울지도 모르는 고유한 목적들의) 모든 목적들의 전체"(GMS B74=IV433) 즉 정언명령에 의해 종합된 선한 목적들의 체계를 가리킨다. 목적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목적 자체로 대우한다. 타인을 목적 자체로 간주하는 것은, 이들을 순수실천이성의 관점을 가진 동료로 대우하는 것이다.[26] 즉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고 최고한 그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한다. 이성적 존재자인 나는 같은 이성적 존재자인 타인과 함께 하며, 내가 X를 하기를 의욕한다는 것을 입법한다면, 이 경우 X가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에게도 의욕될 수 있을 때, 나의 입법은 인정될 수 있다. 즉 "도덕세계"로 제시된 최고선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구성원 간의 이러한 상호성이 최고선에서 정의의 문제를 가능하게 한다.

---

26) 크리스틴 M. 코스가드, 김양현 · 김현정 역, 『목적의 왕국: 칸트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철학과 현실사, 2007, pp.301-304.

칸트는 "타인에 대한 공적 있는 의무"(GMS B68이하=IV430)를 통해 이러한 상호성을 명료화한 바 있다. "각자가 그의 힘이 닿는 한, 타인의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진력하지 않는다면,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에 소극적으로 합치할 뿐, 적극적으로 합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적 그 자체인 주관의 목적들이,[……]가능한 한 나의 목적들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이 목적 자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실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 부여한 목적을 나 또한 선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목적 자체로 간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을 가능한 한 나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한다.(GMS B68이하=IV430)

참고문헌

Ⅰ. 원전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1787)*, hrsg. v. R. Schmid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0.(약호 KrV)

_____,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1785)*, hrsg. v. W. Weischedel,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4.(약호 GMS)

_____,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1788)*, Felix Meiner Verlag, hrsg. Heiner F. Klemme und Horst D. Brandt, Hamburg 2003.(약호 KpV)

_____, *Kritik des Urteilskraft(1790,1793,1799)*, hrsg. v. W. Weischedel,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4.(약호 KU)

_____,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1793,1794)*, hrsg. v. W. Weischedel,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7.(약호 Rel)

_____, *Die Metaphysik der Sitten(1797,1798)*, hrsg. v. W. Weischedel,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77.(약호 MS)

Georg W. Fr.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Suhrkamp Taschenbuch Verlag, 2000.(약호 GpR)

Ⅱ. 원전의 번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아카넷, 2006.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2.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임마누엘 칸트, 이석윤 역, 『판단력비판』, 박영사, 2003.

임마누엘 칸트,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G.W.F 헤겔, 임석진 역, 『법철학』, 지식산업사, 1996.

Ⅲ. 이차문헌

ⅰ. 단행본

김진, 『최고선과 요청주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____, 『칸트와 요청주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백종현, 『존재와 진리: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철학과 현실사, 2000.

_____, 『윤리 개념의 형성: 현대 한국 사회의 철학적 문제』,철학과 현실사, 2003.

_____,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철학과 현실사, 2007.

임혁재, 『칸트의 도덕철학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 『칸트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6.

한국칸트학회, 『칸트와 독일 이상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0.

_____, 『칸트 철학과 현대 해석학』, 철학과 현실사, 2003

Albrecht, Michael, *Kants Antinomie der praktischen Vernunft*, Hildesheim/New York 1978.

Allison, Henry E., *Kant's Theory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_____, *Kant's Theory of Taste: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Jud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Beck, Lewis W.,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Reprinte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Engstrom, Steven and Whiting, Jennifer edited., *Aristotle, Kant, and the Stoics: Rethinking Happiness and Du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Forschner, Maximilian, *Über das Glück des Menschen : Aristoteles, Epikur, Stoa, Thomas von Aquin, Kant*,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3.

Guyer, Paul, *Kant(Routledge Philosophers)*, Routledge, 2006.

Hospers, John, *Human Conduct: Problems of Ethic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2.(존 호스퍼스, 최용철 역, 『도덕행위론: 현대윤리학의 문제들』, 지성의 샘, 1994.)

Kaulbach, Friedrich, *Immanuel Kant*, Gruyter (Auflage 2), 1982. (F. 카울바하, 백종현 역,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서광사, 1992.)

Korsgaard, Christine M.,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크리스틴 M. 코스가드, 김양현 · 김현정 역, 『목적의 왕국: 칸트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철학과 현실사, 2007.)

Neiman, Susan, *the Unity of Reason: Rereading K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 (H. J. 페이튼, 김성호 역, 『칸트의 도덕철학』, 서광사, 1990.)

Rawls, John,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dern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_____, *A Theory of Justice*, Belknap Press(New Ed Edition), 2005. (존 롤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Ricken, Friedo, *Allgemeine Ethik*, Verlag W. Kohlhammer, 1983 · 2003.(프리도 릭켄, 김용해 역, 『일반윤리학』, 서광사, 2006.)

Schulz, Johann, Morrison, James C. trans. and introduction, *Exposition of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1995.

Taylor, Paul W., *Principles of Ethics*,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1975.(P.W.테일러, 김영진 역,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95.)

Wike, Victoria S., *Kant on Happiness in Eth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Wood, Allen W., *Kant's Moral Religion*, Cornell University Press(Ithaca/London), 1970.

_____, *Kant's Eth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Yovel, Yirmayahu,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ii. 논문

김 진, 「칸트에서의 최고선과 도덕적 진보」, 『칸트 연구』 제2권, 1996.

맹주만,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최고선」, 『칸트 연구』 제3권, 1997.

_____, 「칸트의 실천철학에서의 최고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7.

김봉규, 「판단력 비판에서 도덕인식과 도덕성」, 『칸트 연구』 제3권, 1997.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철학논총』 제28집, 2002.

_____, 「칸트의 실천형이상학과 최고선」, 『철학연구』 제87집, 2003.

박필배, 「칸트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 『칸트연구』 제10권, 2004.

Auxter, Thomas, "the Importance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History of Philosophy 17*, 1979.

Beversluis, Joel, "Kant on Moral Striving", *Kant-Studien 65*, 1974.

Caswell, Matthew,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the Gesinnung, and the Theory of Radical Evil", *Kant-Studien 97*, 2006.

Düsing, Klaus, "Das Problem des höchsten Gutes in Kants praktischer Philosophie", *Kant-Studien 62*, 1971.

Engstrom, Stephen, "the Conception of Highest Good in Kant's Moral Theory", *Philosophical and Phenomenological Reaserch 52 no.4*, 1992.

Friedmann, R. Z., "The Importance and Function of Kant's Highest Goo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2*, 1984.

Krämling, Gerhard, "Das höchste Gut als mögliche Welt. Zum Zusammenhang von Kulturphilosophie und systematischer Architektonik bei I. Kant". *Kant-Studien 77*, 1986.

Mariña, Jacqueline, "Making Sense of Kant's Highest Good", *Kant-Studien 91*, 2000.

Marshall, Thomas, "The Ambiguity of Kant's Concept of Happiness", *Reason Papers vol. 26*, 2000.

Murphy, Jeffrie G., "The Highest Good as Content for Kant's Ethical Formalism: Beck versus Silber", *Kant-Studien 56*, 1966.

O'Cornnor, Daniel, "Good and Evil Disposition", *Kant-Studien 86*, 1985.

O'neil, Onora, "Kant on Reason and Religi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editied by G.B.Peterson)*, Salt Lake City: University Utah Press, 1997.

Packer, Mark, "the Highest good in Kant's Psychology of Motivation", *Idealistic Studies 63*, 1983.

Reath, Andrew, "Two Conceptions of the Highest Good in Kan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 1988.

Smith, Steven, "Worthiness to be Happy and Kant's Concept of the Highest Good", *Kant-Studien 75*, 1984.

Silber, John R.,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as Immanent and Transcendent". *Philosophical Review 68*, 1959.

_____, "The Importance of Highest Good in Kant's Ethics", *Ethics 73*, 1963 April.

_____, "Moral Good and Natural Good in Kant's Ethics", *Review of Metaphysics 36*, 1982.

Wike, Victoria S., "Metaphysical Foundation of Morality in Kant", *J. Value Inquiry 17*, 1983.

Yovel, Yirmayahu, "The Highest Good and History in Kant's

Thought".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54*, 1972.
Zeldin, Mary-Barbara, "The Summum Bonum, the Moral Law, and the Existence of God". *Kant-Studien 62*, 1971.